



제438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에 양벌규정 도입〉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5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3. 13.

다. 회 부 일 : 2026. 3.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은 특수건물¹⁾의 소유자에게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²⁾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 현행법 제4조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범위⁴⁾에서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⁵⁾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제5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법인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해당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⁶⁾이 제기된 바 있음.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특수건물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사업주)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수건물의 소유주가 법인이면서 특약부화재보험에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6) SBS, 공공임대 화재보험 안 들었는데 처벌 못해...드러난 법 '구멍', 2026. 2. 26.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유주인 법인과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직접 형벌법규를 위반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 등)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을 두는 취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벌칙규정이 기본적으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⁷⁾.

-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금융위원회 및 한국화재보험협회⁸⁾도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는 위반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통상 6개월) 소요되어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⁹⁾임.

○ 현행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 및 처벌조항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상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통해서도 신속한 위법상태 해소가 가능¹⁰⁾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¹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취약시설보험등¹²⁾을

9) 관계부처 합동,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025. 12. 30.

10)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등 또는 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형벌(5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미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1】

의무보험 미가입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입법례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17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17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제6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2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18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2항제10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